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8
----------	-------

제출년월일 : 2011.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 가.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
- 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등

2. 주요내용

- 가. 조례 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
- 1)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
- 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안 제3조)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정비
- 다.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에 따라 정비 등(안 제8조 등)
- 1)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를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등으로 정비

3. 개정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10. 13. ~ 2011. 11. 2.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1.11.10)

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를 “각 1명”으로, “7인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직무등”을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의 제목 “(회의 및 의사)”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관할구역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이하 “관할 구역”으로 한다)”로 하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명중”을 “지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여 할”을 “참여할”로 한다.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제9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구동의 소속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청취등”을 “청취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15일이내에”를 “15일 이내에”로 하고, “시지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p> <p>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운영 등에</p>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각 1명..... 7명 이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각 호의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p> <p>... 3명</p> <p>3. 그 밖에</p> <p>... ..</p> <p>④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p> <p>.....</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u>7일전까지</u>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5조(회의) ① <u>7일 전까지</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 (생략)</p> <p>2. <u>구관할구역내</u>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p> <p>3. <u>기타</u>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p>	<p>제7조(기능) 각 호</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이하 “관할 구역”으로 한다)</u>.....</p> <p>3. <u>그 밖의</u></p>
<p>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u>구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u>지명중 복합호칭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u>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u>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u>지명 중</u></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p>	<p>④ 참여할</p>
<p>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등) 관련 공무원 청취 등</p>
<p>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p>
<p>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중요한 사항</p>	<p>제11조(회의록)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p>
<p>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보고)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p>
<p>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운영 등에.....</p>